

# 최저임금 안내

“2019년 최저시급은 8,350원입니다.”

## ▶ 최저임금산입 범위(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및 시행규칙 제2조)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다만, 아래의 임금은 산입되지 않음

- ▶ 통화 이외의 것(현물)로 지급하는 임금
- ▶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외 임금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연장·야간 또는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 임금,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한 연장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유급으로 처리되는 휴일에 대한 임금(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제외), 그밖에 이에 준하는 임금
- ▶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해당사유에 의해 산정하는 상여금등은 최저임금 월환산액 기준 25%, 식비·숙박비·교통비등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 월환산액 기준 7% (각 초과분은 최저임금에 산입, 다만 산정단위와 지급주기가 모두 1개월 이내)

## ▶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야 한다(근기법 제93조)

### ⇒ 취업규칙 변경절차의 특례(최저임금법 제6조의2)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에 포함시키기 위해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 총액의 변동없이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 변경 시 근로자의 과반수 (과반수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의 의견청취 필요

## ▶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최저임금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주 또는 월단위로 정해진 임금을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 주·월급을 소정근로시간과 법정주휴시간을 합산한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로 나누도록 함.

- ▶ 법정주휴일의 유급휴일(약정유급휴일, 근로자의 날등)은 제외
- ▶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시 월 적용기준시간: (1주의 소정근로시간수 + 법정주휴시간) × 365 ÷ 7 ÷ 12

## ▶ 쉽게 알아보는 최저임금계산법 예시

| 월급명세서                                                                                                                                 |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                                                     | 최저임금 위반여부                                                                                                             |
|---------------------------------------------------------------------------------------------------------------------------------------|-------------------------------------------------------------------|-----------------------------------------------------------------------------------------------------------------------|
| 기본급 1,500,000원<br>정기상여금 750,000원<br>식비 100,000원<br>교통비 30,000원<br>연장근로수당 200,000원<br>계 3,080,000원<br>(상여금은 기본급의 연600% 12개월로 나눠 매월 지급) | 기본급 1,500,000원<br>정기상여금 314,610원<br>식비·교통비 8,091원<br>계 1,822,701원 | 최저임금적용기준시간수<br>$(40+8) \times 365 \div 7 \div 12 = 208.57$<br>시간당 임금<br>$1,822,701 \div 208.57 \text{시간}$<br>= 8,739원 |

- \* 최저임금적용기준시간 수:  $(40+8) \times 365 \div 7 \div 12 = 208.57 \text{시간}$
- \* 정기상여금 산입분:  $750,000 \text{원} - \{(8,350 \text{원} \times 208.57 \text{시간}) \times 25\% \} = 314,610 \text{원}$
- \* 복리후생비 산입분:  $130,000 \text{원}(\text{식비} + \text{교통비}) - \{(8,350 \text{원} \times 208.57 \text{시간}) \times 7\% \} = 8,091 \text{원}$
- \* 여름휴가비는 1월을 초과하여 지급, 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외 임금 → 최저임금 미산입

### 해고의 예외('19.1.15.개정)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외) ▶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 변경신고 대상 (개정내용) 근로형태에 따라 기간을 달리하던 적용 예외 대상을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로 일원화(→일용, 기간제, 수습, 월급 등 고용형태 상관없이 동일 적용) (적용대상) 2019.1.15.(공포·시행) 이후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부터 적용

제26조(해고의 예외)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생략 ※ 제35조(예고해고의 적용 예외) : 삭제



양산지청 근로개선지도1과 055-370-0975 (양산·밀양)  
양산지청 근로개선지도2과 055-330-6463 (김해)  
최저임금위원회(<http://www.minimumwage.go.kr>)

# 일자리 안정자금 안내

“1인당 월 최대 15만원 지원(5인미만 사업체)”

## ▶ 지원 대상

- ▶ (원칙)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지원  
(단, 예외적으로 아래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30인 이상인 경우도 지원)
  - ①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경비원·청소원에 대해서는 30인 이상 사업주도 지원
  - ② 30인~300인 미만 사업체의 55세 이상 고령자
  - ③ 30인~300인 미만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지역 사업체 종사자
  - ④ 30인 이상 사회적기업·장애인직업재활시설·자활기업·장애인활동지원기관·노인돌봄서비스제공기관·노인장기요양기관 취약계층 노동자
- ▶ (지원 제외) 고소득 사업주(과세소득 5억 이상, 개인은 “사업소득”, 법인은 “당기순이익” 기준), 임금체불 명단 공개 사업주,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 국가 등 공공부문,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 받고 있는 사업주 등

## ▶ 지원 요건

- ▶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월 보수액 210만원 이하 노동자
  - \* 보수액 : 노동자에게 지급된 모든 보수의 총액(기본급 + 통상적수당 + 연장근로수당 등)
  - 일용노동자는 월 실근무일수 10일 이상인 경우 지원
- ▶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 기존 근로자는 임금 수준 저하 금지 및 고용유지 노력 의무
  - \* 단, 특수관계인(사업주, 배우자, 직계존비속)은 제외

## ▶ 지원 금액

- ▶ 5인 미만 사업체 1인당 월 최대 15만원, 5인 이상 사업체 13만원  
- 단시간 노동자는 근로시간 비례 지원
- \* 단시간 노동자 지원수준: 40시간 미만 ~ 20시간 이상 12만원, 20시간 미만 ~ 10시간 이상 9만원, 10시간 미만 6만원

## ▶ 신청 및 지급

- ▶ [신청] 근로복지공단 등 사회보험 3공단 EDI 시스템, 사회보험 연계센터를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근로복지공단 등 사회보험 3공단, 고용센터 방문, 우편, 팩스 신청
  - \* '18년도부터 기지원받고 있는 사업주는 추가 신청없이 계속 지원(단, “최저임금 준수 확인서” 제출 필요)
  - \* 신규 입사(근로자 변경)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신고서(월평균보수변경신고) 상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희망 여부” 체크
- ▶ [지급] 현금지급(매월 15일) 또는 사회보험료 대납방식 중 사업주 선택



근로복지공단 TEL. 1588-0075,  
FAX(양산지사) 0502-280-1900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www.jobfunds.or.kr](http://www.jobfunds.or.kr))